

JB Weekly Web Magazine

| 2025.07.30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 | | |
|----|----------------------------------|-----|
| 01 | 중국 희토류·흑연 등 이중용도 품목 수입 '참고서' 나왔다 | p.1 |
| 02 | 무역위, 일본·중국산 열간압연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망 | p.2 |
| 03 | '중국산→국산' 둔갑...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 p.3 |
| 04 | "KC 미·허위인증" 안전기준 위반 여름용품 대량적발 | p.4 |
| 05 |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활용도 ↑ | p.5 |

1 중국 희토류·흑연 등 이중용도 품목 수입 '참고서' 나왔다

KOTRA,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 공개

중국 전략품목 수입 시 수출 허가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오류 유형 및 제출 서류별 점검 포인트 등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돼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7월 29일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흑연 등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은 공급차질을 겪고 있다.

KOTRA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현지 협력업체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수출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기업은 재고 부족이나 납기 지연 등 공급 차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KOTRA는 우리 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 협력업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Q&A' 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용어 해설, ▲실제 사례, ▲중국 해관 통관 거부 및 행정조치 사례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수출 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항목별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제출 서류별 점검 포인트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했다.

아울러 희토류, 흑연, 텅스텐, 텔루륨 등 주요 품목별 신청 요령과 주의사항도 수록돼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중국 측에 정확한 절차를 안내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이지형 경제협력통상본부장은 "수출 통제는 수출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한국 수입기업의 생산 안정성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번 안내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는 한국 기업과 중국 공급업체 간에 골고른 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7월 29일부터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 무역위, 일본·중국산 열간압연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전망

중국산 광섬유 제품도 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판정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7월 24일 제46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덤핑 조사 2건,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2건을 심의·의결하고 특허권 여부 조사 개시 1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은 올해 3월 조사 개시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덤핑 조사 건이다.

조사 대상 물품인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은 냉간압연 제품의 원재료로, 거푸집, 철판망, 방화벽 등 건설 구조용, 강관용, 자동차용 등 다양한 산업 생산물의 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 통신 네트워크의 정보 전달 매체로 사용되는 광케이블의 제조용 원료다.

무역위는 열간압연 강판과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로, 무역위는 작년 2월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해 기존 특허권 침해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또한, 이날 올해 6월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주)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건을 보고받았다.

3 '중국산→국산' 둔갑...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미 고관세로 수출길 막힌 중국산 물품 원산지 위반행위 점검 강화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점검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원에 달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대체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 후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수출입 업체를 선별해 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가령 A사는 중국에서 리프팅밴드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포장하면서 'Made In CHINA' 표시를 지우고 국내에 유통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물품은 약 13억 원에 달한다.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해 국내에서 연마, 세척 등 단순가공을 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와 부정적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행정제재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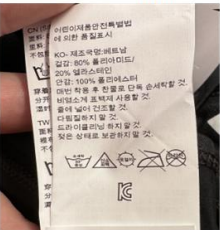
4 “KC 미·허위인증” 안전기준 위반 여름용품 대량적발

관세청, 여름철 인기품목 대상 집중검사

관세청이 지난 6월(6.9.~6.27.)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했다.

7월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했다. 품목별로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 약 4만 2,000점), 수영복(1만 8,000점)이 많이 적발됐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6만 9,000여 점)을 차지했다. 그 밖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상이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기 등이 적발됐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물품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제품의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나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에서 모델명 등으로 찾아볼 수 있다.

구분		사례 사진	
사례 ①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휴대용선풍기(내장전지)
사례 ②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을 표시한 제품		
		아동용 수영복	
사례 ③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		
		제품기	

출처: 관세청

5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활용도 ↑

최신 해외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사례, 업데이트 주기 단축하고 개정 이력 제공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원산지 판정, 수출입 요건 등 무역 관련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들이 품목분류 혼란을 겪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정부의 품목별 관세가 점점 복잡해지면서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관세 부과로 인한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에 대한 물음에 모두 정보 제공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품목분류를 들었다. 실제로 기업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수로 품목분류를 꼽았다.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기업들은 관세포탈, 통관지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7월 22일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68개국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했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2013년부터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 정보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품의 국내 관세율과 HS Code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Code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개선 사항은 품목분류 정보의 파일 형태 저장,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단축, 관세율표 개정 이력 제공, 신규 국가 추가다.

먼저 온라인에 공개된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제공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미국 등 32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기존 연 1회 제공하던 것을 수시로 제공해 관세율표 정보를 최신화한다.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리비전(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는데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 반기별 제공에서 주기를 단축해 분기별 최신 사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관세율표의 개정 이력도 제공되는데 기업은 이를 통해 자사 품목의 관세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수출 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건설 광산 기계, 자동차, 조제 식품, 의약품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는 몽골의 관세율표를 신규로 추가해 2025년 관세율표부터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